

제 3 3 3 호
1973. 3. 14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양택서
편집: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753 호	서울특별시 영동계 2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3
제 754 호	서울특별시 영동계 2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7
제 755 호	서울특별시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8
제 755 호	서울특별시 하천전문로동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13
제 757 호	서울특별시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 분 담금 부과 징수조례..... 13
◎ 공 고	
제 41 호	환지에정지 변경 신고..... 15
제 45 호	화양추가지구 환지계획 공람..... 15
◎ 공인승인서 16
◎ 사 명 1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입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초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서울특별시 영동제2지구 및 영동수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3월 13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753 호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및
영동수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제 2 지구 및 영동수가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
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구의범위) 이 지구는 영
동제 2 지구 및 영동수가지구 토지구
획정리지구라 칭하고, 사업시행지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담,
신사, 압구정, 학, 논현, 삼성, 역삼

대치, 도곡, 방배, 사당, 서초, 우면,
양재동등 4,466,829 명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
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부
족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
동제 2 지구 및 영동수가지구 토지구
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에 의한
분담금으로 보충한다.

제 4 조 (중전토지) 환적교부의 기준
이 될 중전토지의 각필의 면적은
법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단체의 토지대장 및 남아대장 면
적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
하여 별도로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것은 그 면
적에 의한다.

제 5 조 (평정가격) 정리전후의 토지
각필의 평정가격은 그 위치, 형상
면적, 고저, 건승, 교통, 환경등을
참작하여 시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실
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토지의사용) 시장은 사업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
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적

예정지불 지정하고 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에 정지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증명 및 분할) ①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재증명서 발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종전 토지 및 환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 9 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이 조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방법에 의하고 법제 48 조 내지 제 51 조, 제 53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기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중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 3 항 내지 제 7 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면적수 초과할 수 없다.

②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위치근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위치와 대동하다고 인정되는 위치

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이 있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 3 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 보다 증환지된 면적은 제 5 조에 의한 정리부의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

⑥ 지방세법 제 7 조제 1 항에 규정한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면적은 전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 한다.

⑦ 기존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

의 면적 신설도로가 책정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고지가 심하여 건물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연도부담은 1/2를 감할 수 있다.

⑧공통부담은 종전의 토지의 형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황과 지속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급지: 공부상 대 (臺) 또는 기존건물이 점유한토지
2. 2급지: 공부상 전 (田)인토지
3. 3급지: 공부상 담 (牆), 임 (林), 잡종지 (雜種地) 및 기타토지

⑨도시계획상 자연공원으로 책정된 청담, 봉은, 삼능공원용지는 감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삼능공원내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부근의 동등한 위치에 환지를 정한다.

제 10조 (특별지의 환지계획) ①종전토지의 지적이 65㎡에 미달되거나 또는 경정가격이 근소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90㎡이내으로 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활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환지역정지정) 별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역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인차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2조 (가환지역정지정) 기존건물이나 공작물의 이전 또는 별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열거변경 행위 허가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조의 환지역정지 지정전에 가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3조 (청산) 환지역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가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나 환지최분 공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 14조 (청산기준) ①환지최분액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관지로 교부한 권리면적과 원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평가가격을 증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분할정수 하거나 분할교부 할 수 있다.

②견항의 청산금을 분할정수 하거나 분할교부할 때에는 임대료분 기준이므로한 이자불 가산한다.

제 15 조 (환지처분) ①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일부 완료지역 또는 사업중결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중이라도 이를 평할 수 있다.

②환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불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 (재미지의 책정 및 관리처분) 사업비에 상당할 재미지는 시가지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 처분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등기완료후의 불지) 시장은 법제 65 조에 의한 주택등기 절차완 종료하였을 때에는 환지확정지경서 및 환지설명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대리인계출) 당해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9 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명의 신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 20 조 (토지소유자의 자비공사)

①법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비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견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동부담을 1급지 (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제 21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이 사업시행시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서울특별시 영동제 2지구 및 영동수가지구토지구획정리 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석

1973년 3월 1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54 호

서울특별시 영동제 2지구 및 영동수가지구토지구획정리 분담금부과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27 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제 2지구 및 영동수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이하 "구획정리"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구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지소유자로 부터 분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과종액) 분담금의 부과종액은 구획정리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지출될 일체의 경비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금액은 법시행령 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보조금
2. 체비지 (보유지) 배각대금
3. 기타수입

제 3 조 (분담금부과기준) ① 분담금은 구획정리인가전과 환지저정 당시의 토지 평정가격의 증차액 또는 환지저정 면적의 증전 지목별 차액에 의하여 부과한다. 종전 토지 평정가격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한 부동산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등적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환지저분시에는 노선가산출방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분담금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공

하였을 때.

2. 구획정리를 위하여 1:1.1 이하
분담금 제공하였을 때.

제 5 조 (납입방법) 분담금의 부과시
기, 납입기간, 납입방법, 납입장소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 6 조 (채납처분) 분담금을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7 조 (결산)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결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분담금을 수정하거나 또는 공
공이익을 위하여 제공할수 있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
리사업시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

197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755 호

서울특별시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양추가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부담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지구의범위) 이 지구는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지구라 칭하
고 사업시행지구의 범위는 서울
특별시 성동구구의동, 자양동등
460, 588 명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
과 잠실지구에서 전입되는 전입
금 224 백만원으로 총당담을 원
칙으로 하고 이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수수료에
 의한 분담금으로 보충한다.

제 4 조 (종전토지) 환지구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필의 면적은 법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
 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여 별도
 로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
 을 정한 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 5 조 (평정가격) 정리전후의 토지각
 필의 평정가격은 그 위치, 형상, 면
 적, 고저, 간습, 교통, 환경등을 참작
 하여 시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토지의 사용) 시장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
 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토지의관리) 시장이 환지에정
 지를 지정하고 공사불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에정지불
 유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증명 및 분할) ①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승평서
 및 기타 계증서류를 신청에 의하
 여 발급할 수 있다.

②종전 토지 및 환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중지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 9 조 (환지제외의 기준) ①이 지
 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방법에
 의하고 법제 48 조 내지 제 51 조,
 제 53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
 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
 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근처에 지정함
 을 원칙으로 하며 제 3 항 내지
 제 7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용용지 및 녹지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위치근처에 환지불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위치와 대응하다고 인정되는 위치
 로 미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이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이 인적

한 건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정리후 공용 또는 공상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 3 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 보다 증환지원 면적은 제 5조에 의한 정리후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

⑥지방세법 제 7 조 제 1항에 규정 한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목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 기간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건물,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

⑦기존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싹하여 건물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을 다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연도부담은 1/2를 감할 수 있다.

⑧공통부담은 증건의 토지의 형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황과 지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급지: 공부상 대(鎗) 또는 기존건물이 점유한 토지
2. 2급지: 공부상 전(田)인토지
3. 3급지: 공부상 담(蔭), 임(林), 잡종지(雜種地) 및 기타토지

①폐신부국제승수신철담(이하·광장수신소·라 한다)·용지는 감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광장수신소용지내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부근의 동등한 위치에 환지를 정한다.

제 10 조 (특별지의 환지계획) ①중권토지의 지적이 65㎡에 미달되거나 또는 명정가격이 근소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급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90㎡ 미만으로 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 지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환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저기존 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환지예정지 지정) 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2 조 (가환지에 징지 지정) 기존 건물이나 공작물의 이전 또는 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행위허가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조의 환지예정지 지정전에 가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청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중감면적에 대한 가청산금을 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 14 조 (청산기준)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정정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분할정수 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산금을 분할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때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이자율 가산한다.

제 15 조 (환지처분) ①환지처분은 당사자 합의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일부 완료지역 또는 사업종지의 결번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중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②환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 (채비지의 책정 및 관리채분) 사업비에 충당될 채비지는 시가지 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 처분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제 65 조에 의한 촉탁등기 절차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적확정지정서 및 위치설명서의 본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대리인제출) 당해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지물 대리인

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9 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명의신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 20 조 (토지소유자의 자비공사)

①법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비로 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동부담금 1 급(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제 21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이 사업시행 실시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정용로등 경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3월 1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56 호

서울특별시하천정용로
등경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정용로등 경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제 26조◦를 ◦법제 25
조◦로, 법제 27조◦를 ◦법제 26조◦
로, ◦법제 29조◦를 ◦법제 33조◦
로 한다.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항의 경우 매작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제 4호중 ◦고시가격◦을 등록세
법에 의한 인건 유사토지의 시가
표준액(이하◦시가표준액◦이라 한
다)◦으로, 동 단서중 ◦고시가격◦
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7조 단서중 ◦단 법 제 58조◦를
다만 법 제 67조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
표◦로 하며 동표 정용요금반중
◦고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동표 4의 정용요금반중 ◦1㎡당
세사 50원, 양사 80원, 자갈 70
원◦을 ◦수요지의 시가에서 채취
비,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
분의 7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
한 서울특별시 화양 추가지구 토지구
획정리분담금 부과정수 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3월 1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57 호

서울특별시화양추가지구토지
구획정리분담금부과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 127조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양추가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구획
정리◦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
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
구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지소

유자르 부터 분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과종액) 분담금의 부과 종액은 구획정리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지출될 일체의 경비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금액은 법 시행령 제 36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 보 조 금
- 2. 세비지 (보류지) 대가 대금
- 3. 기 타 수 입

제 3 조 (분담금부과기준) ① 분담금은 구획정리인가전과 환지시점 당시의 토지평정가격의 증차액 또는 환지시점 전적의 종전 지목의 차액에 의하여 부과한다.

종전 토지평정가격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한 부동산 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통 적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환지차분시에는 노선가산출납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분담금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공하였을 때
- 2. 구획정리를 위하여 보령이나 물체를 제공하였을 때.

제 5 조 (납입방법) 분담금의 부과시기, 납입기간, 납입방법, 납입장소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채납처분) 분담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7 조 (결산)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결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분담금을 추징하거나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제공사 할 수 있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1 호

환지에정지변경공고

1. 당 시가 시행중인 영등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지구발전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환지 예정지 일부를 변경하고자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부 구획정리 제 2 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며 미 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릅니다.

1973. 3. 12.

서울특별시 관

◎ 서울특별시공고제 45 호

화양주가지구환지계획공람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화양주

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6 조와 동법 제 47 조 및 서울특별시 화양주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도서와 같이 성동구 구의동, 가랑동 각 일부 지역내의 토지 및 지번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부 구획정리 제 2 차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 공고의 내한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릅니다.

공 람 계 요

1. 사 업 명 : 화양주가지구환지계획사업
2. 사업집행지 : 성동구구의동 및 가랑동 각 일부 지역
3. 식 각 면 적 : 460, 588 평

1973. 3. 14.

서울특별시 관

공 인 의 신 조 신 장 서

수 신 서울특별시장

1973. 3. 7.

신청인 서울특별시경찰국장

1. 이 유	비주부기획 151-1096(73.2.12)에 의거 공항경비대신설
2. 서체 및 규격	진가체, 2.1센티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공항경비대장인
4. 사 용 개 시	73. 3. 7. 00 : 00
5. 비 치 처 및 간 수 자	공항경비대 행정계 행정계장
6. 공 인 의 모 형	

공 인 의 신 조 실 청 서

수 신 서울특별시청

1973. 3. 7.

신청인 서울특별시경찰국장

1. 이 유	공인의 마멸로 개각
2. 서체 및 규격	전자체, 2.1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성북경찰서장인
4. 사 용 개 시	73. 3. 7. 00:00
5. 비 치 처 및 간 수 자	성북경찰서경무과, 경 무 과 장
6. 공 인 의 모 형	

공 인 의 신 조 신 청 서

수 신 서울특별시청

1973. 3. 7.

신청인 서울특별시경찰국장

1. 이 유	의통령령제 6367 호 (72. 10. 25) 에 의거 남부경찰 시 신설
2. 서체, 규격	자 자 체 2. 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남 부 경 찰 서 장 인
4. 사 용 개 시	73. 3. 7. 00:00
5. 비 치 서 및 간 수 자	남 부 경 찰 서 경 무 과, 경 무 과 장
6. 공 인 의 모 형	

사 령

◎ 1973. 3. 13.

오류부녀보호 지방행정서기보 김명은
지 도 소 동대문구 지방토목기사보 최상운
현에 의하여 그 직을 변함.

◎ 1973. 3. 14.

마포병원 지방간호기사 신희자
73. 5. 10 까지 의약과 (의무
실) 파견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방건축기사보 박병국
지하철 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기사보 최상운
역청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토목기사보 이덕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인 시 장